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안
번호

39

제출년월일 : 2001. 11. 20
제출자 : 최선용 의원 외 5인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종전에 임기중 1회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함으로써 경비가 많이 드는 미국 등의 지역으로 편중되고 여비도 과다하게 편성 집행하는 낭비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공무국외여행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나. 심사위원회 설치.(안 제4조)
- 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 가.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의정활동을 위한 지식 함양 및 선진 행정 기법 도입 등을 위하여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의원 및 4급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안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로 하되 의원의 수는 과반수를 넘지 못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①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 공동 활용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수당) 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수당은 예산 범위내에서 1일 50,000원으로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 국외 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 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행국						
여행자	소속 위원회	성명	성별	연령	여행 경비	
					금액	부담기관

2. 여행일정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일비	식비	숙박비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 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절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I.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 · 자료의 분석내용 등

III. (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 · 서명 · 출판사 · 출판년도 ·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년월·소속의회를,
둘째장(속표지)에는 여행국·여행목적·여행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제도
(제 목)

○○년 ○○월
(월까지만 표시)

○ ○ 의 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행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